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. 9. 6 선고 2021가단55149 판결 [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클라스

담당변호사 이시형

피 고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대륜

담당변호사 조우리

변 론 종 결 2022. 6. 28.

판 결 선 고 2022. 9. 6.

## 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2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'C'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에 대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, 피고는 상하수도 기자재의 제작·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. 나. 원고는 2018. 3. 18. 1) 피고와 사이에, 피고가 원고에게 필러형 원심분리기 및 유수분리기 자동화 설비(이하 '이 사건 기계설비'라 한다)를 2018. 4. 8.까지 제작·납품하고, 원고는 피고에게 총 계약금액 200,000,000원[= 계약금 100,000,000원(이 사건 기계설비 현장 도착시 지급) + 60,000,000원(이 사건 기계설비 시운전 후 지급) + 40,000,000원(이 사건 기계설비 가동 1개월 후 지급), 부가가치세 별도]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(이하 '이 사건 공급계약'이라 하고, 관련 계약서를 '이 사건 공급계약서'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다. 이후 피고는 2018. 4. 8.경 이 사건 기계설비를 원고 공장에 인도하였는데, 원고는 그 이후인 2018. 4. 9. 총 80,000,000원, 2018. 4. 16. 10,000,000원, 2018. 9. 10. 10,000,000원을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약정한 계약금 100,000,000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.

라. 한편, 원고는 2019. 3. 5. 및 2019. 4. 11. 2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'피고가 2018. 4. 8.까지 이 사건 기계설비의 납품을 완료하기로 하였는데, 위 설비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이 사건 공급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행해달라'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각 내용증명우편(이하 합하여 '이 사건 내용증명우편'이라 한다)을 발송하였으며,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은 각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4, 6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,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 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이 사건 공급계약상 이 사건 기계설비의 납품 완료일은 2018. 4. 8.이다. 그러나 피고 측은

현재까지도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. 더욱이 이 사건 기계설비의 경우 더 이상 정상적인 가동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.

따라서 이 사건 공급계약은 피고 측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 송달 또는 원고 측이 제출한 2021. 11. 29.자 준비서면 송달을 통해 해제되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총 200,000,000원(=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00,000,000원 + 위약금 100,000,000원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## 나. 판단

먼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①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3조 제1항 및 제2항2) 에서 ‘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일이 경과하여 착수하지 아니할 때’, ‘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거나 “공급자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“수요자”가 판단할 때’를 계약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, ② 원고 공장으로 인도된 이 사건 기계설비 일부에 대한 시운전이 진행되었으나, 결국 해당 시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.

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들고 있는 사정만을 근거로,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공급계약이 피고 측 귀책 사유를 원인으로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①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이 결국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였으나, 관련된 문제가 이 사건 기계설비의 하자 때문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며, 이 사건 기계설비 시운전 과정에 참여한 증인 D의 일부 증언 내용만을 근거로 피고 측이 이 사건 기계설비 시운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.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,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예정하지 않는 별도의 요청을 하면서 시운전을 방해하였기에 결국 해당 시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.

②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시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원고

측이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을 피고 측에게 발송한 것을 제외하고, 원고 측이 해당 시운전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거나 구체적으로 이 사건 기계설비의 하자 등을 지목하며 이에 대한 수리를 요청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.

③ 또한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는 수요자인 원고가 이 사건 기계설비가 현장에 도착한 즉시 관련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,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계약금이 최종적으로 지급된 시점은 2018. 9. 10.경이었다.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단지 관련 시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,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만을 근거로,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기계설비에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의 착수를 하지 않았거나, 계약 기간 내에 이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.

④ 한편 원고는,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기계설비를 납품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, 이에 대해서도 피고는 원고 측이 협조만 한다면 다시 시운전을 하는 등 이 사건 공급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,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설비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하자 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.

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, 원고가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더 이상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, 피고 측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않는 상황에서는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3조 제2항에 따른 계약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.

⑤ 달리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들을 뒤집고, 이 사건 공급계약이 피고 측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해제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나 사정을 찾기 어렵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영순

1)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체결일은 ‘2018. 3. 10.’이나 실제 계약 체결일은 ‘2018. 3. 18.’이다.

2)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기재한다.

